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나430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 판 경 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나4302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가소439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2024. 9. 10.

판결 선고2024. 11. 19.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가소439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6. 6.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6. 6.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3. 12. 4.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같은 날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위 2023. 12. 4. 이전에 제1심판결의 선고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2023. 12. 4.

무렵에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3. 12. 4.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C외 6필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8층, 지상 17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D건물 제14층 E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55.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6. 자 의정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G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원고는 2011. 12. 6. 피고의 은행 계좌로 경매수수료 명목으로 210만 원, 강제집행비용 명목으로 17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1. 18. 접수 제5032호로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G을 운영하던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해준다면서 경매수수료 210만 원을 요구함과 아울러 장차 전 소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비용이 170만 원 필요하다고 하여 위 경매수수료 210만 원과 함께 강제집행비용 170만 원(이하 위 강제집행비용만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2012. 1. 18. 원고를 신청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H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로, 원고를 신청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J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K로 각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후 2012. 1. 19. 위 K 부동산인도명령이 인용되었으며, 2012. 3. 5. 위 I 부동산인도명령이 인용되었다.

② 위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2. 3. 14.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L로 위 I 부동산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12. 4. 9.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H을 만나 인도 집행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2012. 4. 23.까지 자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다.

③ 이후 위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 10. 위 본 집행을 취하하였다.

④ 그런데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강제집행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 측 외에 별도로 법무사 등에 위 각 신청을 위임하지는 않았다.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장차 예상되는 강제집행절차의 신청 등을 위임받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고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강제집행 신청의 각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완수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 지배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노호성

판사황기선

판사이상윤